

[4]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 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법 [재화 공급의 특례] § 10 ⑤).

-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 ② 취득 시 부가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포괄적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부가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재화 포함]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2012.2. 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④ 부가법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 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2017. 4. 1. 거래분부터 적용]

증여의 의미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재저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증법 § 2 [정의(2015.12.15 신설)] 6호].

따라서 기부 또는 접대 등을 위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증여에 해당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물의 배포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간판을 제작, 이를 고정거래처에 설치하고 그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임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한 때에는 해당 간판을 고정 거래처에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매장려금품 등의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구분	내용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판매장려금품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업상 증여> 법규부가 2010 - 10, 2010. 1. 29. 부가통칙 10-0- 5
기증품 (증정품)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 할증품 · 증정품(사전 지급 확정된 할증품을 추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 아님	<과세대상 아님> 부가 46015 - 4077, 2000. 12. 19. 서삼 46015 - 12078, 2002. 12. 4. 서면3팀 - 1368, 2007. 5. 7. 부가통칙 10-0-6
경품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업상증여> 제도 46015 - 11319, 2001. 6. 4. 부가 46015 - 2223, 1999. 7. 30. 부가 46015 - 892, 2001. 6. 20. 부가통칙 10-0-6
광고선전물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직매장 ·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로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 상호 · 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재화(재떨이, 컵, 열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 및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 과정에서 제공되는 시음용 재화	<과세대상 아님> 부가 46015 - 1108, 1996. 6. 7. 부가 46015 - 983, 1999. 4. 12. 부가 46015 - 1481, 1996. 7. 22.

<과세대상 아님>

부가 46015 - 1108, 1996. 6. 7.

[제목] 재화의 공급에 관한 질의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음

[질의]

폐사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컵, 재떨이, 얼음통등을 거래처가 아닌 주로 식당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하는지

1. 폐사의 거래처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이다.
2. 식당등 유흥업소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의 거래처이다.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 - 983, 1999. 4. 12.

[제목]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요약]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기의 제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공장 견학자에게 당해 공장내에서 자기가 생산한 음료를 무상으로 음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 - 1481, 1996. 7. 22.

[제목] 광고선전 · 사업상증여의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에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장려금품 등으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이며,
4.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5.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6.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5] 종업원할인액의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 등

종업원 할인판매는 일반 소비자 판매와 달리 마케팅 비용, 대리점 유통수수료, 고객관리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판매경로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증대를 통해 재고를 소진시키고, 차량 점유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광고·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할인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개인적 공급,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787, 2014. 10. 2.].

할인판매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으로 사용인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을 충족하여 거래의 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각종 부대비용의 절감과 홍보효과 등을 창출하는 종업원에게 그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회사가 당초 제조·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취득가액 이상으로서 할인판매가격이 유통이나 홍보 등의 효과를 감안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 누리로 볼 수 있어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종업원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종업원할인액의 성격, 근로계약 내용, 수행업무, 보수지급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할인판매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으로 종업원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41-98-3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처 등에 대한 종업원할인액이 판매와의 관련성, 할인정책의 목적·대상 및 할인가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할 인정책에 의하여 제품(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판매 점유비율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면 역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6]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증여 시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증여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임을 고려할 때 이를 부가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건물을 증여한 경우 통상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부가 - 753, 2013. 8. 23. ; 부가 - 1120, 2011. 9. 19. ; 부가 46015 - 3868, 2000. 11. 28.].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다. [부가-753, 2013. 8. 23. 외].

<사업상 증여>

법규부가 2010 - 10, [2010. 1. 29.]

[제목]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요약]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내용]

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제조회사의 매출장려목적에 따라 매출목표 달성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총판공급계약서에 따라 연도별 해당 쟁점거래처의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신청인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과세대상 아님>

부가 46015 - 4077, 2000. 12. 19.

[제목]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판단 여부

[요약]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증여하는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재화 대신 상품권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삼 46015 - 12078, 2002. 12. 4.

[제목] 판촉용(증정품)으로 증여하는 자사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56, 2000.02.09) 및 (부가 1265-1355, 1984.07.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에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1265-1355, 1984.07.0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 - 1368, 2007. 5. 7.

[제목]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할증품의 사업상증여 해당여부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항]

"갑"법인이 할증행사 기간 동안 구매하는 도매상의 모든 구매액 또는 구매수량에 대하여 증실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4 [기증품의 과세] 의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중 어느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2.0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30 개정]

<사업상증여>

제도 46015 - 11319, 2001. 6. 4.

[제목]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품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금액(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여부)?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223,1999. 7.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소득46011-21019, 2000. 7.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223,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 - 2223, 1999. 7. 30.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 - 892, 2001. 6. 20.

[제목] 백화점운영사업자가 경품부판매후 추첨에 의해 경품지급시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될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